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5075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312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환급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2. ㈜D으로부터 [redacted]시 F 공장용지 7,601㎡를 비롯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16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0,000원(아래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6.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은 2006년경 설립한 G 주식회사(아래에서 'G'이라고 한다)의 상호만 바뀐 형태여서 별도의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7, 18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아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G과는 별개의 회사로서 N이 신규로 설립하여 창업한 법인으로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함에도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을 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등 규정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하

1) 제1심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1, 6항임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회사나 피고 모두 그 부분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여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를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한편 조세의 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비과세나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두7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4, 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 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redacted]시는 수도권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16.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redacted]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6 내지 10, 20, 29, 30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 개시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G은 2006. 6. 27. [redacted]시 Q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스콘 사업, 레미콘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6. 6. 29.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아스콘 제조업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본점 소재지에 공장을 설립한 후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G은 2011년 및 2012년경 G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이 R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2012년 5~6월경 공장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공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년 10월경 모회사인 S 주식회사의 부도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② N은 2015. 8. 12. G의 주주들인 S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G의 주식 20,000주(지분 100%)를 합계 20,000원(1주당 1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G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8. 17. G의 본점 소재지를 [redacted]시 B'로 이전하였다. N은 G의 대표이사였던 P에게 G의 [redacted] 제조업 공장 설립 허가 등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N은 불과 1개월 뒤인 2015. 9. 16. G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redacted]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③ N은 G 명의로 2016. 4. 11.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이전 부지로 하여 공장이전승인 신청을 하였다. G은 2016. 8. 12. [redacte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이전승인을 받았는데, 그 공장이전승인조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2] [별표20]의 제1호 자목[3]과 [redacted]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 [별표 19][4]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아스콘 공장이므로 공장이전승인은 승인서상의 G만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2종사업장에 해당하는 [redacted] 제조 공장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할 수 없으나, 종전에 [redacted]시에 소재하였던 G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redacted]시의 관할구역으로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1의 자목 규정과 내용이 동일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이 가능하다.

④ N은 2017. 5.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G 명의의 공장이전승인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이전)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2017. 6. 21. [redacted]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이전)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이전)승인의 주체를 G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고, 2017. 7. 1. G의 아스콘 제조업 사업자 면허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원고의 2021. 5. 11.자 준비서면 17쪽).

	당초 승인	변경 승인
회사명	G	**원고**
대표자	N	**N**
소재지	F	좌동
업종 (분류번호)	아스콘 제조업 (23991)	좌동
공장부지면적	4,054㎡ (부지: 4,029㎡/도로: 25㎡)	**3,471㎡** (부지: 3,446㎡/도로: 25㎡)
제조시설/부대시설 면적	제조시설: 178.75㎡/부대시설: 264.06㎡	제조시설: 300㎡/부대시설: 311.40㎡
비고	명의, 면적 변경 등	

⑤ N은 공장설립(이전)변경승인 및 사업자등록을 받은 직후인 2017. 7. 2. G을 O에게 양도하였고, O은 2018. 2. 6. G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⑥ N이 G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부지로 하여 공장이전승인을 받고, 원고 회사 명의로 공장설립(이전)변경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이전)승인의 주체를 G에서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으며, G의 아스콘 제조업 사업자 면허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원고 회사로서는 계획관리지역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redacted] 제조 공장을 건축하여 아스콘 제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업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 원고 회사가 G의 아스콘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 면허와 공장이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인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가 G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자 면허나 공장이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아스콘 제조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서 그 흠결 시에는 아스콘 제조업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점, G은 2017년경 아스콘 제조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면허와 공장이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G이 원고 회사에 아스콘 제조업 사업자 면허와 공장이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전부 이전한 이상 G으로서는 아스콘 제조 관련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 회사와 G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의 임직원 등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도 볼 수 없어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는 타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의 문언상 '사업의 승계'를 포괄승계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와 같은 특정승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⑧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경우 G이 운영하던 기존 아스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제조업을 양수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별지

부동산 목록

1. [redacted]시 F 공장용지 7,601㎡

2. [redacted]시 T 도로 520㎡

3. [redacted]시 F 지상

J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789.28㎡

U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공장

1층 206.11㎡, 2층 199.26㎡, 3층 199.26㎡

V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363㎡

W동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54㎡

K동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우레탄판넬) 단층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1.2㎡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부 칙<제14477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1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2016. 9.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끝.